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8
------	------

2025.09.0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송경택 의원(찬성자 21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9.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송경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상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문화도시”로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총 5개임.

-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변경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서울시는 2017년 8월 1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6호)을 통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조례명을 포함하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고자 하였음.¹⁾
- 그러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타 시·도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없고,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며, ▶‘문화시민도시’는 ‘문화도시’정책의 하위 개념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음.²⁾
- 이에 따라 2017년 9월 21일 전부개정 시에는 조문 중 ‘문화도시종합계획’과 ‘문화도시 정책자문위원회’만 각각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

1)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6.)에서 수립한 정책비전의 ‘문화시민도시’를 반영함.

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8.3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86호).

- 이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2023년 5월 22일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고 상위법령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정비하였으나, 동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례에는 여전히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어 정비(2023.5.22.) >

해당 조항	현행	개정
제13조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15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인용한 5개 조례(조문 5건)를 대상으로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1조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2조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3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제5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4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
제5조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3항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인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조례간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용어 변경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만큼 서울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송경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5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송경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효원, 최민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상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문화도시”로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총 5개임.
-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u>문화도시종합계획</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 -----. ----- ----- <u>문화도시종합계획</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 6. ~ 9. (생략)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문화도시종합계획</u> 6. ~ 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생략)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u>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u>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u> --- ----- -----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 정책 위원회</u> 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문화도시위원회</u> --- ----- ----- --.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상 개정된 용어(문화시민도시→문화도시)를 현재까지 미반영(인용)한 현행 서울시 5개 조례¹⁾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개정된 용어 미반영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총 5개 조례)